

## 소비자안전기본법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22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허영·유동수·박상혁  
한민수·이광희·이재관  
김태선·박지혜·박균택  
박지원·소병훈·부승찬  
위성곤·장철민·박성준  
천준호·최혁진·박용갑  
서삼석·김준혁 의원  
(20인)

###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등장,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확대, 해외직구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식품·제품·화학물질 등 품목별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어 소비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위해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축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재화에 대한 차단과 관리

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처별·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해정보의 통합 제공(안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위해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나. 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10조)

국가는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다.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안 제11조)

해외위해재화의 국내 수입·판매·제공 등을 제한 및 차단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소비자안전 조사(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위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안 제14조)

- 1) 사업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위해재화의 수거·파기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3)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함 있는 재화 등에 대한 수거·파기 등 조치

에 관한 실적과 분석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사.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재화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재화 등의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기준 및 인력·설비를 갖추도록 함.
- 2)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비자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아.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활동(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소비자안전정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며, 소비자안전경보 등의 발령 및 위해정보의 수집·처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 소비자단체소송(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위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 또는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고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안전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강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안전”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특성, 통상적인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때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을 말한다.

4. “위해정보”란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외국민의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위해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6. “해외위해재화”란 해외에서 안전과 관련한 결함으로 인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국내 수입·유통·판매가 불가한 재화등을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재화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 소비자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3. 재화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4.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소비자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등은 위해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소비자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할 책무를 지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해외위해재화의 국내 유입·판매등에 따른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재화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등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재화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제7조(위해정보의 통합 제공)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위해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위해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위해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국가등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관련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법인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이 재화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협력) 국가등은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위해정보의 공유
2. 소비자안전 관련 전문가의 국제교류
3.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운영
4.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회의 등 참가
5. 그 밖에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장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립

제10조(소비자안전계획 수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소비자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소비자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1.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4. 재화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소비자안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소비자안전 분야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⑤ 소비자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 ① 해외위해재화의 수입·판매·제공 등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12조(소비자안전 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등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

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정 재화등과 관련된 위해정보가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다수 수집된 경우
2.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를 실시한 후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2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험·분석·조사기관이 요청받은 수준의 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시험·분석 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분석·조사가

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분석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16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나. 제17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재화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해당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과 동일한 재화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등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등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재화등이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화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재화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재화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재화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

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재화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거·파기 등 조치 실적 및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함 있는 재화등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실적과 분석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 실적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에 따른 조치 실적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재화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직접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고 위해 재화 등의 유통·판매 차단 등의 관련 조치를 요청할 것
2.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위해 재화 등의 판매 차단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해 재화 등의 판매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취한 관련 조치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할 것
3.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 등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4. 사이버몰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5.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그 원인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릴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나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를」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통신판매중개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

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활동

제2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재화 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사업자 및 등록소비자단체 등과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7.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료 수거 및 결

## 과 보고

### 8.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제23조(소비자안전경보등의 발령)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비자안전경보 또는 소비자안전주의보(이하 “소비자안전경보등”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안전경보등을 발령할 때 위해의 원인·결과, 위해 발생 이력, 위해 취약 집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비자안전경보등의 발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등의 발령
2. 재화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재화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재화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안전센터의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3조에 따른 시정요청을 하여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재화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화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병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해정보 제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위해정보 수집·제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⑧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비자와 관계행정기관등에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⑨ 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을 위해 해당 재화등에 대한 검사·평가를 할 수 있다.
- ⑩ 제1항·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처리, 제8항에 따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9항에 따른 재화등에 대한 검사·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소비자 단체소송

제25조(소비자단체소송) ① 「소비자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위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소송의 제기는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의 대상,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단체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

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

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

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 따라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밝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밝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밝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장 조사 및 시정조치

제30조(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위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위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5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가해진 피해의 정도
2.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조사의 의뢰) 국가등은 사업자의 제5조제4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31조제2항·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원장이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3조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 ②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같은 법 제97조의2,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9장 벌칙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 ·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벌칙) ① 제17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수거·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이 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5항 중 “제8조·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6호 중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소비자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소비자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로 한다.

제4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장(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2조 본문 중 “제30조·제50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제3호 중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제35조제1항제2호의 업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 또는 제80조”를 “제8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